



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물품을 말한다.

7. (생략)

1. ~ 7.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6. -----  
-----  
-----  
-----  
----- 다르게 -----  
-----  
----- 협정 -----  
----- 범위 내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채약 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구축·운영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물품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순화용어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령상 근거(법 제33조 제2항제4호) 신설 반영 ('22.1.1. 시행 예정)

- 고시 적용범위 명확화

제4조(적용대상)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 (생략)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물품의 배정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해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협정에서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물품의 배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않는

다.

• 자구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 기준 반영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생략)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 ① 세관장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 4. (생략)

② (생략)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제7조(잔여수량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  
보통신망-----  
-----  
-----.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 ① -----

----- 다음 각 호의 -----  
-----  
-----.

1. -----  
-----

----- 선하증권(B/L)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조제5호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 기준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

-----  
-----  
----- 부여하지 않는  
다.

③ -----  
-----  
-----  
-----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  
-----  
-----  
-----.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 별지 제1호의3  
서식-----

기준에 따라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자구 정비

- 자구 정비

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 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 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 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신청서류 확인) 세관장은 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5. (생략)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② (생략)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

② -----  
-----  
----- “전자신고등”이-----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신청서류 확인) -----  
-----  
-----.

1. 2. (현행과 같음)

3. ----- 작성방법-----  
-----

4. 5. (현행과 같음)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용어 정비

• 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후단의 내용 중 일부를

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  
---. 다만,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으로 분리하여 조문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련 조문 정비

④·⑤ (생략)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  
-----  
-----  
----- 않을 수 ----.

제1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 -----  
-----  
-----  
----- 부인하지 않는  
다.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② -----  
-----  
-----  
----- 않을  
-----.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 3. (생략)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략)

②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  
-----  
-----.

1. -----('원산지증명서 여부')란-----

2. 3.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① -----  
-----  
-----.

1. 협정에서 -----

2. (현행과 같음)

② -----  
-----  
-----.

1. ---- 선하증권(B/L) -----  
-----  
-----

• 자구 정비('>:')

• 자구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2. (생략)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2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제16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  
-----  
----- 별표 2의 동종·동질물품----- 제출 면제물품-----.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1. 법 제8조제2항의 단서-----  
-----

2. 그 밖에-----

• 조문의 제목과 용어 일치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불가 품목에 대한 예외적 제출요구 규정이 FTA 관세법으로 상향('19.12.31.) 됨에 따라 근거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③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및 원산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관세채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세관장은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원산지증명서 원본(채약상대국과의

③ -----  
-----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7항-----.

제17조(관세채납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  
-----.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

• 누락된 인용 조문 포함하여 정비

• 실제 고시명에 맞게 수정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4.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18조에 따라 수입자

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4. (현행과 같음)

② -----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  
-.

③ -----  
---- 않은 -----  
-----.

④ 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① 수입자가 ----- 관련서류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근거가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 조문 정비

•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련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서류 제출 방법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정비

• 조문 정비

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단서 신설>
  
3. (생략)
4.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기재요령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설>

② 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  
-----.

1. (현행과 같음)
2. -----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 (현행과 같음)
4. -----  
-----(작성 방법-----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 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② -----  
-----

- FTA관세법 제9조제2항 신설을 반영하여 품목 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 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심사기준 정비

- 용어정비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내 발급되어야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심사기준에 반영
- 후단의 내용을 제16조 제3항 개정 규정과 일치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사항의 수정

② (생략)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

-----  
--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7항-----.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① 수입자가 -----  
-----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  
-----  
-----.

1. 협정-----

-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서도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입자의 오류 보완 기회 확대

- 자구 정비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사이트([cert.korcham.net](http://cert.korcham.net))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법」 제3조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으로 한다.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

② ----- 관세사 -----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

제22조(증명서발급기관) ① -----  
-----  
-----  
-----  
-----.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 -----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웹사이트 주소 등 현행화

• 관세사법 제3조의 용어와 일치

• 인용 법령 명칭 정비

• 자구 정비

②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

한상공회의소등”이라 한다)

② -----  
 ----- 대한상공회의소등은 -----  
 -----  
 -----  
 -----.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경우: 선하증권(B/L) -----  
 -----  
 -----
2. -----  
 -----  
 ----- 경우: -----  
 -----

• 자구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띄어쓰기 오류정비



거나 발급

③ (생략)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생략)

②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③ (생략)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  
-----  
-----.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른 원산지

•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 적용범위 명확화

•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규칙 제13조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2-2(이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이라 한다)와 같다.

⑥ 제1항의 전자적인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전자문서 방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세관에 발급신청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2. 대한상공회의소에 발급신청하는 경

간이확인 물품은 신청인이 규칙 제10조 제1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

-----  
-----

⑤ 규칙 제10조제12항의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은 별표 2의2와 -----

⑥ -----  
-----  
-----

1.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

2. 대한상공회의소등-----

제도 법적 근거를 시행 규칙으로 상향 규정('22.1.1. 시행 예정)함에 따라 관련 고시 조문 정비

- 시행규칙으로 법적근거 상향됨에 따라 관련 고시 조문 정비

- 인용 고시 명칭 정비

- 인용 고시 명칭 정비

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  
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자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  
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략)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생략)

② 제26조제5항에 해당하는 원산지증  
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의 경우 규칙 제1  
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  
-----  
-----  
-----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내제조(포괄)확  
인서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재명세서  
(BOM)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  
서를 말한다.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완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포괄)확인서 발급  
허용 반영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한 국내제조확인서  
작성방법이 시행규칙  
별표 제6호 서식 뒷면에  
반영됨에 따라 조문 삭제

1. 2. (생략)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1. 2. <삭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

-----  
-----  
----- 별표 3의 -----  
-----

-.

1. -----(싱가포르와의 협정): -----  
--
2. -----  
---- 협정): -----  
----
3. ----- 협정): -----
4. ----- 협정):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자재명세서 (BOM) 표준서식 신설
-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

5. ----- 협정): -----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② -----  
-----  
않는다.

1. ----- 협정: -----  
-----  
-----

2. ----- 협정: -----  
-----  
-----

3. ----- 협정: -----  
-----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방법 정비

•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방법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 선적일 후 7 근무일 (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소급발급”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29조(현지확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연기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

4. ----- 협정: -----  
----- 않는다-----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 후 7일 (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③ -----  
-----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

제29조(현지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  
----- 연기 신청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선적 후 발급의 예외 규정에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반영

• 선적 후 발급의 예외 규정에 이스라엘과의 협정 반영

• 별표의 용어와 통일

• 조문 정비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현지확인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

서-----.

③ ----- 연기 신청서-----  
-----  
-----  
-----  
승인 여부-----  
-----  
-----.

④ ----- 현지확인 장소-----  
-----  
-----  
-----  
-----  
-----.

제30조(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자구 정비

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나. (생략)

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  
공장의 유무, 제조과정(예 : 단순 가  
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 부가가  
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  
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  
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  
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  
다.

----- 자

가. 법 제44조, 제45조

나. (현행과 같음)

3. -----  
-----예: -----  
-----예: -----  
-----  
-----  
-----  
-----

② -----  
-----  
-----  
-----  
-----  
-----  
----- 통보하여야 -----  
-----

- 자구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③ 세관장은 제29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회장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1. 신청인이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31조(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① -----  
-----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  
-----  
-----  
-----  
-----.

② -----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 근거 신설

• 용어 정비

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규칙 제10조제 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제32조(신청서류 심사)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작성방법

5. (현행과 같음)

② 기간 동안

1. (현행과 같음)

• 용어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협정 및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 받은 협정 및 품목번호 6단위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4. (생략)

③ (생략)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

② (생략)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

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2. ----- 적용 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 ----- 우수업체: ----- 우수업체-----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본 1부-----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

-----  
-----  
-----

• 용어 정비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상의 용어로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② (생략)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 제6란(Remarks)에 날인
-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

- 1. 2. (현행과 같음)
- 3. 인도와의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 협정으로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표 4 -----  
-----.

- 1. ----- 협정): -----  
-----
- 2. ----- 협정): -----  
-----
- 3. ----- 협정): -----
- 4. ----- 협정): -----

• 조문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신 설>

④ (생 략)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

5. ----- 협정): -----  
-----  
-----  
-----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  
-----  
- 수출신고필증-----  
-----  
-----  
-----  
-----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 대비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절차 규정
- 관세법의 용어와 일치

야 한다.

1. (생략)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4. (생략)

② (생략)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와의 협정 및 베트남과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 그 밖의 협정 : 수정하려는 글자 중

---

1. (현행과 같음)

2. ----- 원본. 다만, 정정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정신청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인도, 베트남 및 인도네  
시아와의 협정: -----  
-----  
-----  
---

2. ----- 협정: -----

•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모든 기관 발급 협정에 대해 정정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사후(30일 이내) 제출 허용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에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양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2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발급기관에 발급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취할 수 있다.

④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6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을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는 재발급 가능한 협정에 추가
- 정정발급, 재발급의 경우라도 발급신청을 취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② ----- 발급 취하 신청-----  
-----  
----- 발급신청을  
-----.

제37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6조제6항-----  
-----.

③ -----  
-----  
-----  
서류-----  
-----  
-----.

제38조(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① -----  
-----  
대한상공회의소등의 -----

•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인용 조문 오류 정비

• 자구정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  
-----  
-----.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않는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④·⑤ (생략)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권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① -----  
----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  
-----  
-----  
-----.

② -----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  
-----  
-----  
-----  
-----  
-----  
-----  
-----  
-----.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①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  
-----  
-----  
작성대장을 -----.

•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용어와 일치

•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용어와 일치

• 조문 정비

다.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 3. (생략)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수출용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  
----- 경우에는 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  
-----  
-----  
-----  
-----  
-----  
-----  
-----  
-----  
-----  
----- 국내제조확인  
서나 -----  
-----  
-----  
-----  
-----.

- 조문 정비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완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포괄)확인서 발급 허용 반영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별표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략)

② (생략)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45조(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① -----  
-----  
----- 원산지관리사 -----  
-----  
-----  
-----  
-----  
----- 「전자정부법」 제38조 -----  
-----.

1. (현행과 같음)
2. 별표 5-----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  
-----

• 인용조문 정비 등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개정 반영

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1. (생략)
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영 제52조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기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관세평가분류원
2.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3. 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 관세청 통관기획과

-----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 -----  
-----

제4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 -----  
----- 사항: -----  
-----
3. -----  
----- 여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  
-----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개정 반영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 관세청 특수  
통관과

5. 기타 사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②·③ (생략)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 5. (생략)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

4. 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5. 그 밖의 사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전심사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① 사전심사부서-----  
-----  
-----.

1. 영 제37조제1항-----  
-----

2. ~ 5. (현행과 같음)

② 사전심사부서-----  
----- 적정 여부-----  
----- 기재  
하여야-----.

제49조(신청서류의 보정) ① 사전심사부서-----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등 정비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보정요구 이유
3. 4. (생략)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사유
3. 4. (현행과 같음)

② -----  
-----  
----- 사전심사부서 -----  
-----  
-----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부서-  
-----  
-----  
-----

1.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

- 용어 정비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 조문 정비

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생략)

4.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략)

제51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기관(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생략)

-----

2.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 신청한 -----

3. (현행과 같음)

4.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6. (현행과 같음)

제51조 <삭제>

<삭제>

<삭제>

제52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현행과 같음)

• 조문 정비

• 제49조제2항의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조문 정비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위원회 폐지 반영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생략)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

② 사전심사부서-----  
-----  
----- 정보통신망-----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  
-----  
----- 반복사용 여부-----  
-----.  
-----  
----- 수입물품-----.

제55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심사부서-----  
-----  
-----  
----- 않거나-----  
-----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생략)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

-----  
-----  
-----.

③ 사전심사부서-----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6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유예 여부-----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

• 사전심사 업무 이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정비

차) ① (생략)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 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 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3. (생략)

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입신고 수리전-----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① ---  
-----  
-----  
-----  
-----  
-----  
-----  
-----  
한다. 이 경우 -----  
-----  
-----.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 관세법의 용어와 일치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자구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인되는 전자메일(E-Mail) 또는 FAX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② -----  
----- 날부터 -----  
-----  
-----  
-----.

제60조(범칙조사의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  
-----  
-----  
-----.

제61조(통지방법) -----  
-- 않은 -----  
-----  
-----.

제62조(준용규정) -----  
- 않은 -----  
-----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제63조(재검토기한) -----  
-----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 12월 31일-----  
-----  
해야 -----.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00호(2021.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 제34조제3항제6호, 제35조제3항제1호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 제35제4항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1항제7호, 제2항제6

-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등

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p> <p>“계재 생략”</p>	<p>[별표 1]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p> <p>“계재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띄어쓰기 오류 정비</li> </ul>																				
<p>[별표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물품</p> <p>“계재 생략”</p>	<p>[별표 2]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p> <p>“계재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2의 제목 등 정비</li> </ul>																				
<p>[별표2-2]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p> <p>“계재 생략”</p>	<p>[별표 2의2]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p> <p>“계재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령(규칙 제10조제12항)에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근거 신설 반영</li> <li>• 적용대상 품목 추가 지정</li> </ul>																				
<p>[별표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p> <p>[별표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p> <table border="1" data-bbox="235 1189 795 1428"> <thead> <tr> <th>협정의 종류</th> <th>선적 후 발급 스탬프</th> </tr> </thead> <tbody> <tr> <td>인도와의 협정</td> <td rowspan="2">"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td> </tr> <tr> <td>싱가포르와의 협정</td> </tr> <tr> <td>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td> <td rowspan="3">"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td> </tr> <tr> <td>베트남과의 협정</td> </tr> <tr> <td>중국과의 협정</td> </tr> </tbody> </table>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p>[별표 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p> <p>[별표 3]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스탬프</p> <table border="1" data-bbox="963 1173 1518 1455"> <thead> <tr> <th>협정의 종류</th> <th>선적 후 발급 스탬프</th> </tr> </thead> <tbody> <tr> <td>인도와의 협정</td> <td rowspan="2">"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td> </tr> <tr> <td>이스라엘과의 협정</td> </tr> <tr> <td>싱가포르와의 협정</td> <td rowspan="5">"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td> </tr> <tr> <td>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td> </tr> <tr> <td>베트남과의 협정</td> </tr> <tr> <td>중국과의 협정</td> </tr> <tr> <td>인도네시아와의 협정</td> </tr> </tbody> </table>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이스라엘과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적 후 발급 스탬프 날인 방법에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을 추가</li> </ul>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싱가포르와의 협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협정의 종류	선적 후 발급 스탬프																					
인도와의 협정	"ISSUED RETROSPE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이스라엘과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ISSUED RETROACTIVELY" (세로 0.8cm, 가로 7cm)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별표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계재 생략”

[별표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계재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2쪽 중 제1쪽)

\* 작성방법을 참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특시	
1. 수입신고번호				
2. 수입신고 수리일자				
3. 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4. 신청의 종류	X, X, X (U:정정, D:란 삭제, I:란 추가) ※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5. 정정신청 일자		
6. 정정신청사유				
7.란 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란 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 전	정정 후

[별표 4]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스탬프

“계재 생략”

[별표 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요건

“계재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2쪽 중 제1쪽)

\* 작성방법을 참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특시	
1. 수입신고번호				
2. 수입신고 수리일자				
3. 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4. 신청의 종류	X, X, X (U:정정, D:란 삭제, I:란 추가) ※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5. 정정신청 일자		
6. 정정신청사유				
7.란 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 삭제, 란 추가)				
란 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 전	정정 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 제출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신청구분(Applicant) [ ] 업체(Company) [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 FTA포탈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mm, dd, yyyy ~ mm, dd, yyyy)						
공급물품 명세서 (Good(s) Statements)							
6. 연번 (S/N)	7. 제품번호 (Goods No.)	8. 품명 (Description of Good(s))	9. 적용협정 (Name of FTA)	10. 품목번호 (HS No.)	11.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충족 (Y) 불충족 (N)	13.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신청인 (Applicant): \_\_\_\_\_ 년 월 일 (YYYY/MM/DD)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O세관장 귀하  
(Customs Collector of OO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OO세관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OO Customs) 직인(Seal)

210mm×297mm[직상기 80g/㎡(제활용용)]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확인)서  
Customs Verification of Declaration of Origin(blanket period)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Application No.)	접수일(Date of receipt)	처리기간(Processing duration) 20일(20 days)

1. 신청인 (Applicant)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신청구분(Applicant) [ ] 업체(Company) [ ] 관세사(Customs broker)					
2. 공급 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공급 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 ] FTA포탈에 게시 및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급 받는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대표자(Name of Representation)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 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통보 사서함(Post office Box)					
4.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Reference No.)							
5.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mm, dd, yyyy ~ mm, dd, yyyy)						
공급물품 명세서 (Good(s) Statements)							
6. 연번 (S/N)	7. 제품번호 (Goods No.)	8. 품명 (Description of Good(s))	9. 적용협정 (Name of FTA)	10. 품목번호 (HS No.)	11.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2. 충족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충족 (Y) 불충족 (N)	13.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참고사항(Notice) : \* 원산지 기준 불충족물품은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을 기재 하세요 (As for goods whose origin criterion is not fulfilled, information such as RVC rate or major process flow is required to be writte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requests confirmation on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by Customs Collec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신청인 (Applicant): \_\_\_\_\_ 년 월 일 (YYYY/MM/DD)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O세관장 귀하  
(Customs Collector of OO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12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

Declaration of Origin (with blanket period) has been properly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paragraph 2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nly valid for cases in which origin criterion has been fulfilled.)

OO세관장 직인  
(Customs Collector of OO Customs) 직인(Seal)

210mm×297mm[직상기 80g/㎡(제활용용)]

• 영문 날짜 정비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Correction Request Form for Advance Ruling)**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Application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 (Agent) [ ] 계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계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 (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 (6-digit)]
보정기간 (Revision Period)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mm, dd, yyyy ~ mm, dd, yyyy (for 00 days))		
보정요구사유 (Reasons for Request)			
보정할 사항 (What to be Revised)			
문의처 (Person in Charge)	00세관 00과 담당자 00 (호) ( Customs officer 000, 00 division, 00 Main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서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Regarding a request for advance ruling, revision is request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mm dd, yyyy)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000 귀 중

210mm×297mm[복합지 80g/㎡(제활용용)]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심사 보정요구서**  
**(Correction Request Form for Advance Ruling)**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Application Date)		
신청인 구분 (Type of Applicant)	수입자(Importer) [ ] 대리인 (Agent) [ ] 계약상대국 수출자(Exporter of Contracting Party) [ ] 계약상대국 생산자(Producer of Contracting Party) [ ]		
신청인 (Applicant)	성명 (Full Name)	전화/팩스번호(Tel/FAX)	
	주소 및 국가 (Address and Country)	전자우편주소(E-mail)	
신청물품 (Goods) Subject to Advance Ruling)	품명 (Description)	규격 (Specification)	품목번호(6단위) [HS No. (6-digit)]
보정기간 (Revision Period)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mm, dd, yyyy ~ mm, dd, yyyy (for 00 days))		
보정요구사유 (Reasons for Request)			
보정할 사항 (What to be Revised)			
문의처 (Person in Charge)	00세관 00과 담당자 00 (호) ( Customs officer 000, 00 division, 00 Main Custom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서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Regarding a request for advance ruling, revision is requested as stated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aragraph 1 of Administrative Rule on Paperwork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년 월 일(yyyy/mm/dd)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000 귀 중

210mm×297mm[복합지 80g/㎡(제활용용)]

- 영문 날짜 정비

<서식 신설>

[별지 제19호서식]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재명세서 표준서식 신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① 완제품 내역

품명	
모델명	
적용협정	

② 재료 내역

일련 번호	품명 (재료명)	품목번호 (HS8단위)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	가격 (원)	공급처 (생산자)	입증서류
1	OOOOO	OOOOO	KR	2	1,000,000	2,000,000	□□전자	원산지확인서
2	△△△△△	OOOOO	미상	1	500,000	500,000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완제품 가격(원)	합계 (원)	역내산 재료비
		비역내산 재료비

작성 자 : (서명)  
 상 호 :  
 작성일자 :

※ 지원파일형식: PDF, EXCEL

210mm×297mm[복합지 80g/㎡(재활용품)]